

**[무배당 약사다이렉트 생활비 받는 건강보험(갱신형) 18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1)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약사다이렉트 생활비 받는 건강보험(갱신형) 1801

(2) 회사는 자동갱신시 보험종목의 명칭에 갱신형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다르게 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1) 최초계약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갱신형)상해사망	10년	전기납	20세~60세	월납 연납
특별 약관	(갱신형)암진단금, (갱신형)뇌출혈진단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갱신형)암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 활자금, (갱신형)암사망, (갱신형)뇌졸중사망, (갱신형)질병사망			20세~60세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사망			23세~60세	

(2) 갱신계약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갱신형)상해사망	10년	전기납	30세~ (갱신종료보험나이 -보험기간)세	월납 연납
특별 약관	(갱신형)암진단금, (갱신형)뇌출혈진단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30세~ (갱신종료보험나이 -보험기간)세	

(갱신형)암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암사망, (갱신형)뇌졸중사망, (갱신형)질병사망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사망			33세~ (갱신종료보험나이-보험기간)세	

주1) 갱신종료보험나이 및 갱신주기

구분	갱신종료 보험나이	보험 기간	갱신주기
(갱신형)상해사망, (갱신형)암진단금, (갱신형)뇌출혈진단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갱신형)암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	80세/ 90세/ 100세	10년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
(갱신형)암사망, (갱신형)뇌졸중사망,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사망, (갱신형)질병사망	80세	10년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

주2) 보험기간 1~9년의 경우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 나이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의 잔여기간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1) 대상 특별약관

기본계약 (갱신형 상해사망)
 (갱신형)암진단금
 (갱신형)뇌출혈진단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갱신형)암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뇌출혈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후생활자금
 (갱신형)암사망
 (갱신형)뇌졸중사망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사망
 (갱신형)질병사망

(2)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갱신계약 보험료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통보함.

②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 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 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3) 보험료 납입방법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 (1)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 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 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기타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용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함
 - ①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 ② 질병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 ③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일 것
- (2)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3)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4)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5) 판매채널
비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제외)